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 제안이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로 인하여 직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변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이는 업무 외의 추가적 정신적인 부담과 함께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함은 물론 소속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인감업무담당공무원
 -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안 제2조)
- 보험의 가입
 -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안 제3조 제1항)
 -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계약(안 제3조 제2항)
- 보험료 지급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안 제4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안 제5조 제2항)

3.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 6조와 부칙으로 된 이 제정조례안의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보험가입 대상자를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안 제2조), 보험의 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르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하고(안 제3조),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며(안 제4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안 제5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체계>

제1조(목적)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3조(보험의 가입)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이고 동법시행령 동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해야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이에 따른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본 조 신설 2002. 12. 31〕

둘째, 가입대상과 계약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입대상은 구와 동의 인감담당공무원과 업무대행자를 포함하고 있지만(40명), 계약방식은 직위포괄 계약으로 업무담당자의 실명이 아닌 업무 자체에 대한 계약방식을 채택한 것은 구청 및 동사무소 인감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의 피해방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안된 본 조례안은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 받아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에 직원들의 인감증명업무 기피현상 및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배려하고 우리 구의 과대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생각하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